

사천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 경과

- 제 출 : 2007. 10. 2.(사천시장)
- 회 부 : 2007. 10. 2.(총무위원회, 의안번호 제68호)
- 상 정 : 2007. 10. 9.(제117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상정, 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(정보통신담당관 김태주)

가. 제안이유

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하여 사천시 지리정보체계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

나. 주요내용

- 1) 관리부서는 DB구축시 총괄부서와 협의 중복투자방지 신설(안 제15조제3항)
- 2) 사업 시행시 준공도 작성비용을 설계에 반영(안 제16조제1항제1호)
- 3) 준공계 제출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준공도 제출(안 제16조제1항제3호)
- 4) 도시개발사업 및 구획정리 사업시 수치지형도 제작 및 갱신 후 총괄부서에 제출(안 제16조제1항제4호)
- 5) 자체 갱신 능력초과시 전문기관에 용역의뢰 가능 신설(안 제16조제3항)
- 6) 총괄부서장은 관리부서장에게 자료제출요구 가능 신설(안 제16조의2)
- 7) 관리부서는 지형지물의 변경유발 공사시 도시기준점 활용 신설(안 제16조의3 제1항)
- 8) 총괄부서의 도시기준점 유지관리 의무 신설(안 제16조의3제2호)

다. 관계법령

- 「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」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최진기)

- 개정조례안은 2003년 7월에 70여 억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도로와 지하시설물도 구축사업이 내년 2월 완료 예정으로 있어 향후 발생할 시설물공사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갱신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 보완하려는 것으로
- 주요내용으로는
 - 관리부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시 총괄부서와 협의, 중복투자 방지 조항을 신설하고, 사업 시행시 준공도 작성비용을 설계안에 반영토록 하였으며,
 - 준공계 제출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준공도 제출 의무화와 도시개발사업, 구획정리사업 시 수치지형도 제작 및 갱신 후 총괄부서에 제출하고, 자체 갱신 능력 초과시 전문기관에 용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,
 - 총괄부서장은 관리부서장에게 자료제출 요구가 가능하며, 도시기준점 유지관리 의무 신설 등 지리정보체계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- 검토의견으로는
 - 현 조례상 유지관리(데이터베이스 갱신) 부서에서 데이터를 갱신토록 되어 있으나 본연의 업무로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소홀히 할 경우 갱신되지 않아 시스템이 사장될 경우 다시 많은 예산을 투입, 재구축해야 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
 - 상위법 등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개정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위 원	질 의 내 용	답 변 자	답 변 내 용
이정희 위 원	◦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관 리부서에서는 이의가 없었는 지?	정보통신 담 당 관 김 태 주	◦ 관리부서와의 간담회를 지난 6월12일 등 2회에 걸쳐 담당 주사와 담당자들이 모여 토론 한 바 있으며, 이의가 없었음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: 없음